

■ 하천법 시행규칙 [별표 5의2] <신설 2017. 9. 21.>

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(제19조의3 관련)

점용(행위)의 목적	제출기간
1. 토지의 점용	10일
2. 하천시설의 점용	14일
3. 공작물(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경우는 제외한다)의 신축·개축·변경	20일
4. 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신축·개축·변경	60일
5. 토지의 굴착·성토·절토,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	20일
6. 토석·모래·자갈의 채취, 그 밖에 하천 산출물의 채취	20일
7. 스케이트장·유선장·도선장의 설치	20일
8. 식물의 식재	5일
9.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	20일
10. 선박의 운항	12일